##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60

발의연월일: 2024. 8. 27.

발 의 자: 김선교·김성원·김소희

서일준 • 정동만 • 최수진

구자근 · 김상훈 · 이헌승

김예지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의무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 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는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29조의2·제30조제1항 신설).

법률 제 호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로 한다.

제5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비밀유지 의무)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제)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 및 위탁받아 수행			
하는 자는 <u>「형법」 제127조</u>	<u>「형법」 제129조부터</u>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제133조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으로 본다.			
<u>&lt;신 설&gt;</u>	제29조의2(비밀유지 의무) 제26조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		
	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벌칙) <u>&lt;신 설&gt;</u>	제30조(벌칙) ① 제29조의2를 위		
	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 략)	$\underline{2}$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